

경운대학교 교원연구년제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교원이 국내·외에서 연구활동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이하 “연구년 교원”이라 한다)의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① 연구년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고, 그 기산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한다.

② 제3조 1항의 6년의 자격으로 6개월의 연구년을 승인받은 연구년 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승인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자격) ① 연구년을 부여하는 자격은 경운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6년 이상 근속한(연구년 기산일 기준) 전임교원으로 연구와 교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교원이라야 한다.

1. 임용된 후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학술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할 수 있는 국내·외 단체로부터 해외파견 연구지원을 받거나 산학협력을 위해 산업체 파견의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년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대학의 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해 전공전환 교육 대상으로 선발된 경우 전항 1호를 제외하고 연구년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구년 수행 후 재부여 자격은 전항의 기준과 같다. 다만, 연구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6개월의 연구년 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

③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 재직년수가 4년 미만인 교원에게는 6개월의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7조 제2항과 제5항은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결과물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비 파견교원과 교류교원 또는 파견근무교원(전문위원 등)은 이 규정에 의한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위원회에서 대학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3년이 경과하면 국비파견교원, 교류교원 또는 파견근무교원(전문위원 등)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제한)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전체교원의 7분의 1이내로 하고 소속 학부(과) 교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년도 연구년 교원의 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연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년 교원의 수에는 휴직교원, 국비 파견교원, 교류교원, 파견근무교원(전문위원 등),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중인 교원 및 기타 총장이 승인한 국내·외 재단 또는 연구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출장 교원의 수를 포함한다.

- ③ 교무위원, 부속기관장 등의 보직교원에게는 보직 재임기간 중에는 연구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④ 경운대학교의 학사운영과 교내·외 연구 활동수행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징계처분(견책 이상)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구년 교원이 될 수 없다.
- ⑥ 연구년 교원은 제7조 제5항의 결과물로서는 학술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 ⑦ 제7조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제출 시까지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하며, 연구실적물 제출 시부터 다음 연구년 신청자격 기간을 산정한다.

제5조(신분)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경운대학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6조(처우) ①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년 기간중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급량비,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02.>

- ②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교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약정된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 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 후 최소한 연구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또는 징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및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9.01.>

-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년 중의 보수전액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의 잔여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이 이를 감해줄 수 있다.

- ④ 의원면직인 경우에는 임용기간과 관계없이 전항을 적용한다.

- ⑤ 연구목적의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연구결과물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결과물은 연구년 종료후 2년 이내에 국내저명학술지 이상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체능계의 작품전시·발표는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3회 이상 및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물이 국제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기업파견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학 결과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교원에게는 제5항과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연구년 교원은 본교의 학과(부) 및 대학원 강의 등 제반 학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석,박사 과정학생의 논문지도 및 심사는 담당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 활동은 가능하다.

제8조(신청) 연구년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연구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연구 계획서와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교원은 연구계획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9조(선정) ① 연구년 신청자에 대하여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② 총장은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학부(과)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계획변경) 연구년과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년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서의 연구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타 대학에 출강 또는 타 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없다.

제12조(휴직등과의 관계) ① 연구년 자격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휴직기간,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② 휴직중인 교원은 제3조의 자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0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 연구년 신청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